

의안번호	2201073
의 퇴 인	서범수 의원
회 답 일	2024. 9. 13.
추 계 번호	24B097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9억원, 2030년 34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612억원(연평균 322억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299	312	323	335	343	1,612	32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육아휴직의 허용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업무를 다른 근로자(이하 “업무대행근로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 업무대행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하 “동료수당”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동료수당은 업무대행에 따라 추가된 근로의 양과 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봄	의무규정
2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6조(지급기간 등)제1항제1호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4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1항제2호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 미첨부 - 개정안은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내용임 -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고용안정장려금(코드: 1345-350)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동 내역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5년 예산안 기준 352억원을 편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증가 규모 및 신규 사업의 시행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의 추진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 미첨부 -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5년 고용노동부는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743억원의 예산을 편성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30일 이하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없음
3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1항제1호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본문참조
4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제1항제2호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72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며, 해당 개정안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4.7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2.9	3.4	3.2	3.2	3.2	3.2	3.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출산휴가

- 출산휴가 급여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출산 등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표 2] 출산전후휴가 급여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산전후휴가급여	268,516	285,771	289,498	304,899	301,713	347,012

주: 1.집행액 기준

2.2024년은 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출산휴가 급여의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급기간을 모두 곱하여 산출

- 이 중 지급기간은 개정안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에서 현행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차감하여 산출
- 현행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의 지급기간은 90일(다태아 120일)이며,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지급기간은 30일임
 - 개정안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65호)제74조에 따라 90일(다태아 120일)이므로²⁾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지급기간은 0일로³⁾ 현행법에 따른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초과

지급기간에 비해 감소하게 됨

[표 3]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추가 지급기간

(단위: 일)

	현행(A)		개정안(B)		확대(B-A)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대규모 기업
단태아	90	30	90	0	0	-30
다태아	120	45	120	0	0	-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⁴⁾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2023년 기준 대규모 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29,076명에게 620억 5,300만원이 집행됨

[표 4] 대규모 기업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수	36,768	34,251	31,824	31,034	30,650	30,583	29,076
총 수급액	53,940	54,289	56,694	60,875	61,572	62,230	62,053

주: 집행액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배우자 출산휴가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지급기간도 연장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급기간) 개정안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72호)에 따라 30일이므로⁵⁾ 추가재정소

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4)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요가 발생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지급기간: 현행 5일 → 개정안 30일⁶⁾

□ (사업대상자) 지원대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 본 추계서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하며,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이므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6.5%)을 토대로 산출

[표 5] 출생아 수 및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생아 수(A)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00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수(B)	1,059	18,720	18,270	16,168	15,797
비율(C=B/A×100)	0.3%	6.9%	7.0%	6.5%	6.9%

주: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의 비중(6.5%)을 적용하여 산출

[표 6]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추정치):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생아 수 전망치 (중위 기준)(A, 천명)	229	239	248	257	263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B=A×6.5%, 명)	14,858	15,507	16,091	16,675	17,06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다.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 (지급단가)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2024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산출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7)에 따른 상한액 규정8)에 따라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401,910원/5일)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7]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연혁

(단위: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한액	382,770	382,770	382,770	382,770	401,910	401,910

자료: 각 연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단가(401,910원/5일)가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기간(30일)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8]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A, 명)	14,858	15,507	16,091	16,675	17,064
현행 지원단가(5일)(B, 원)	401,910	401,910	401,910	401,910	401,910
개정안 지원단가(30일)(C, 원)	2,411,460	2,411,460	2,411,460	2,411,460	2,411,466
추가 지원단가(D=C-B, 원)	2,009,550	2,009,550	2,009,550	2,009,550	2,009,555
추가재정소요(E=A×D, 억원)	299	312	323	335	343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순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추계결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30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99억원, 2030년 343억원으로 추계됨

7) 제76조(지급 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호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급기간 등(안 제76조)	299	312	323	335	343	1,612	322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보험 가입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주요 전제와 실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등이 상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